

웅지세무대학교	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	문서번호	6-3-03(D)-0
		제정일자	05.03.01
		최근개정	22.06.23
		주관부서	교무처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웅지세무대학교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심의·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03.01., 개정 2013.01.01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.12.18.>

1.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<신설 2010.03.01.>

제3조(구성) ① 위원중 교학처장은, 당연직으로 하고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당연직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10.03.01., 2015.03.24., 2016.01.12., 2017.12.18., 2022.06.23>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15.03.24., 2022.06.23>

③ 당연직 이외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시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제5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03.01., 2022.06.23>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. <개정 2010.03.01.>

~~제8조 삭제 <2010.03.01.>~~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교학처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03.24.>

부 칙 <1판-제정/시행 2005.03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 <2판-개정/시행 2010.03.01.>

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/시행 2013.01.01.>

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4판-개정/시행 2015.03.24.>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5판-개정/시행 2016.01.12.>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6판-개정/공포 2017.12.18.> <시행 2017.09.01.>

이 규정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 <7판-개정/시행 2022.06.23.>

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